[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5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5점)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 배점한도 +3점~-5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보유자	3.0
	②일반기술	A. 특허, 디자인 등록보유자,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D.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E.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F.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	2.0
나. 중소기업	①혁신형중소기업	A.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②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A. 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1.0 0.5 0.5 0.25 0.75 0.5 0.5 0.25
		B.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 소상공인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 소기업	0.75
		- 보훈복지단체([별표1],[별표2],[별표3]의 경우)	0.25
		- 보훈복지단체([별표4]의 경우)	1.0
다.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청년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 2026.12.31. 까지 유효>	
		- 0.5배 미만인 경우	2.0
		-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①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1.0
		B.「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D.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12.31. 까지 유효>	2.0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G.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12.31. 까지 유효>	1.0
		H.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I.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J.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1.0
	② 군수품 정책 지원	K.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1.0
		L. (급식류) 접경지역 광역 시·도단체장이 인증하는 "원품사용 업체 인증" 을 받은 자 중 해당 인증에 표기된 품목이 계약 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소재	0.5
		-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미소재	0.25
사 . 불 공 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5.0
		- 8%이상~10%미만	-3.5
		- 6%이상~8%미만	-3.0
		- 4%이상~6%미만	-2.0
		- 2%이상~4%미만	-1.0
		- 2%미만	-0.5
	②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부터 적용)	-1.0
	③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④ 품질하자 (급식류) (최대 −5점)	A. 조달청과 계약한 급식류 전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자(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 계약금액의 5%이상	-1.2
		-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0.8
		-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0.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0.3
		- 계약금액의 0.1% 미만 하자 1건당 ※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0.2
		B. 조달청과 계약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감액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 계약금액의 20%이상	-0.6
		- 계약금액의 10%이상 ~ 20%미만	-0.5
		- 계약금액의 1%이상 ~ 10% 미만	-0.4
		- 계약금액의 0.1%이상 ~ 1% 미만	-0.3
	⑤ 식품위생법 등 주요법률 위반 (급식류) (최대 −5점)	A. 최근 3년 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5.0
		- 영업정지 1회 당	-3.0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1회 당	-2.0
		- 과태료 부과 1회 당	-0.4
		- 시정명령 1회당	-0.2
		※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감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	
	⑥ 원산지 위반 (급식류) (최대 −5점)	A. 최근 2년 이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품목 거래행위금지 1회 당	-2.0
		- 과태료 부과 1회 당	-0.4
		- 시정명령 1회 당	-0.2
		※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① 산업재해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026.9.15.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② 안전보건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으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일반기술”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②일반기술” 심사항목의 “A. 특허, 디자인 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5. “②일반기술“의 “B. 우수단체표준”, “KS”, “단체표준”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6.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 가지만 인정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혁신형중소기업

1)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1) “A” 공동수급체 지원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2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4) "A"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B" 영세기업 지원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한다.

6) "A"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7) 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지정서, 정관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4)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1.8	'21.9	'21.10	'21.11	'21.12	'2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2.8	'22.9	'22.10	'22.11	'22.12	'23.1
103	104	103	104	104	105

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②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③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①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②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③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 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①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②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①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계산식} = \frac{\text{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text{기간제근로자} + \text{소속 외 근로자}}{(\text{소속근로자} + \text{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C.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조달청장	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D.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E.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2028.12.31. 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G.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 2028.12.31. 까지 유효>		인증서’
H.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포상증서’
I. 녹색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J. 부품 국산화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품 국산화 확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특이사항)’

2. K.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
3. L. 급식류에 한하며, 접경지역지원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표기된 품목과 계약목적물과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접경지역 원품 판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동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산업분류번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4.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3) 조달청 군수품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22.4.1일) 적용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간 내에 “기존 세부기준”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세부기준”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존 세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2.4.1.),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22.3.23.)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4. 품질 하자 (급식류 적용, 최대 -5점)

1) 품질하자 평가 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시 하자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하자발생 평가 시 급식류 전품목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하자발생에 대해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감점하고,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점한다.

(적용례) 급식류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점 적용방법 [하자발생 횟수 당]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1건(0.1% 미만) 발생시 : 0.4점 감점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5건(0.1% 미만) 발생시 : -(0.4+0.4+0.4+0.4+0.4) = -2.0점

5.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급식류 적용, 최대 -5점)

1) 급식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 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 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적용례) 품목제조 정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2.0)+(-0.4)+(-0.4)+(-0.4) = -3.2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 사항 등은 모든 품목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포함한다. 다만, 공통사항 적용 시 위탁급식사업장 등 제조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건은 제외한다.

※ 심사대상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식약처 식품정보활용 시스템을 통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급식류 적용, 최대 -5점)

1) 급식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적용례) 거래행위금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2.0)+(-0.4)+(-0.4)+(-0.4) = -3.2점

※ 계약담당공무원은 식약처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7.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벌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다만 2026.9.15.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